

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4. 06. .
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개정이유

-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며,
-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안에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%경감(과밀억제권역제외) - 안제13조제2항

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중 “도시계획법”을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중 “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”를 “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